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4월 일 (제308회)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 헌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4월 일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헌 의원 대표발의)

발의연월일 : 2012년 4월 일

발 의 자 : 정 헌 · 김봉희 · 김종필 · 김희수 ·

박문희 · 윤성옥 · 황규철 의원(7명)

의안 번호	308
----------	-----

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규정과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,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투자유치 활동 중 공공기관의 도내 이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1조, 안 제38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(안 제2조)
- 다. 조직개편에 따른 국장 명칭 변경(안 제4조)
- 라. 지식경제부 고시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(안 제37조)

3. 조례안 : 불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 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기업유치지원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국내·외 기업”을 “국내·외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”으로 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“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”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”를 ““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”란 법 제2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건설방재국장”을 “균형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「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」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도민을”을 “도민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2호와 제7호의 “10년”을 각각 “7년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투자 및 기업유치”를 “투자 및 기업유치, 공공기관의 이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<u>국내·외</u>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국내·외 기업 및 공공기관</u> <u>의 이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“<u>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</u>”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2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.</p> <p>4. ~ 18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<u>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</u>”란 법 제2조제1항제 <u>7호</u>-----.</p> <p>4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.</p>	<p>제4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문화관광환경국장, 건설방재국장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1. ----- ----- <u>균형건설국장</u>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지방세 감면) 도지사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도세 감면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지방세 감면) ----- ----- ----- 「<u>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1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 <u>도민</u>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1조(교육훈련보조금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도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(생략)</p> <p>2.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 <u>10년</u>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·폐업한 경우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7.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후 <u>10년</u>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</p> <p>8. (생략)</p> <p>제38조(투자유치 성공 보상) ① 도지사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, 공무원 및 단체,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7년</u> ----- -----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7년</u> ----- -----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투자유치 성공 보상) ① ----- 투자 및 기업유치, 공공기관의 이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법 령

□ 외국인투자 촉진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외국인"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,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(이하 "외국법인"이라 한다)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.
 2. "대한민국국민"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.
 3. "대한민국법인"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
 4. "외국인투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- 가.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(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소유하는 것
 - 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(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)
 - 1)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(母企業)
 - 2) 1)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
 - 3) 외국투자가
 - 4) 3)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
- 다.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(설립

중인 법인을 포함한다)으로서 연구인력·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(出捐)하는 것
라.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(이하 "외국인투자위원회"라 한다)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

5. "외국투자가"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.

6. "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"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을 말한다.

7. "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"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-4호(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)

제14조(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)①제9조제1항의 입지지원을 받은 기업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(토지 등을 분양·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)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.

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여야 하며, 투자가 완료된 경우

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투자계획서상의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, 타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의 입지 지원을 받은 기업이 착공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동일 시군구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지방이전기업은 제9조제1항의 입지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,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지방이전기업은 제9조제1항의 입지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⑦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